

협 조 전

안전보건팀 / 담당자 : 유장열 이사
TEL 031- 645-2251 / FAX (031) 758-0537

문서번호 : 안전보건팀 22 - 17호
시행일자 : 2022. 10.05
수 신 : 현장소장
참 조 :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제 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안전보건교육 실시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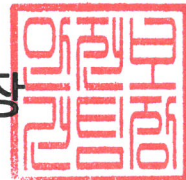
1. 전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2020. 1.16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장비 27종 운전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자는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과 특별 교육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해당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 되지 않아 고용노동부 점검시 과태료 부과 처분등 행정조치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되고 있는바 ,

3. 당사 각 현장은 법적 안전보건교육을 미 실시 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 하거나 ,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력시 한 명도 누락없이 안전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안전보건공단 특수형태근로자 안내 1부 . 끝

안 전 보 건 팀 장





건설장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시행

“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6일부터 건설장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책임주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강사자격 |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 [별표 1] 참조

교육시간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단기간,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단기간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교육내용 |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특별교육(40종)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www.safetyedu.net) 문의 | 1644-565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시행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적용되는 교육시간	면제전 교육시간
최초노무 제공시 교육		1시간이상	2시간이상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30분이상	1시간이상
특별교육		8시간이상	16시간이상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1시간이상	2시간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이 모두 면제됩니다.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등)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교육의무 미준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교육대상 1인당 10만원~150만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교재 등 교육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작업시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에 대한 주지·알림·교육 등 포함)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교육 대상 건설장비는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27종 건설장비가 해당됩니다.

- | | | | |
|---------|-------------|-------------|------------|
| ▪ 불도저 | ▪ 모터그레이더 | ▪ 콘크리트펌프 | ▪ 천공기 |
| ▪ 굴삭기 | ▪ 롤러 |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 향타 및 향발기 |
| ▪ 로더 | ▪ 노상안정기 | ▪ 아스팔트피니셔 | ▪ 자갈채취기 |
| ▪ 지게차 | ▪ 콘크리트벙칭플랜트 | ▪ 아스팔트살포기 | ▪ 준설선 |
| ▪ 스크레이퍼 | ▪ 콘크리트피니셔 | ▪ 골재살포기 | ▪ 특수건설기계 |
| ▪ 덤프트럭 | ▪ 콘크리트살포기 | ▪ 쇄석기 | ▪ 타워크레인 |
| ▪ 기중기 | ▪ 콘크리트믹서트럭 | ▪ 공기압축기 | |